

축구인 인권보호 규정

제정 2023.12.19 (이사회 승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3조에 따라 축구인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행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② “회원단체”는 다음과 같다.

1.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협회의 회원단체 및 그 산하단체(이하 “협회 관계단체”라 한다)

③ “축구인”은 다음과 같다.

1. 협회 및 협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및 동호인 등
2. 회원단체의 임직원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회원단체
2. 제2조제3호의 축구인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방지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협회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축구인 인권보호 계획 수립 및 실행)

- ① 협회는 매년 축구인 인권보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축구인 인권보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축구인 인권보호 기본방향
 - 2. 축구인 인권보호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 3. 타 기관과의 협력사항
 -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협회 관계단체는 이 규정 및 체육회 협회 인권보호 계획을 준용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축구인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축구인 인권침해 대응

제6조(축구인 인권침해 행위의 금지)

- ① 축구인은 폭력 및 성폭력을 포함하여 다른 축구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원단체는 축구인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금지되는 폭력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다음 각 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1. 신체를 폭행하거나 헐박하는 행위
 - 2. 욕설이나 폭언
 - 3. 대면 또는 비대면 상황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5. 합리적 이유 없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7.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8.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10.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협박, 회유 등 2차 가해를 하는 행위

11.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

제7조(인권침해 피해의 신고)

① 축구인은 축구계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축구인이 인권침해 행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은폐하거나 신고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피해자·신고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회원단체는 피해자 및 신고자가 협박, 회유 등 2차 가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원단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치요구가 있을 시 피신고자의 직위해제(직원), 직무정지(임원), 물리적 공간 분리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조치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물리적 공간 분리를 요청하였을 시 분리조치 등을 즉시 이행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해 인권침해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제1호에서 제6호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

④ 회원단체 및 축구인은 인권침해 피해자 또는 신고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신고자 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피해자·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3. 그밖에 신고와 관련된 비밀

⑤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회원단체 및 축구인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치 및 징계)

회원단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구제조치나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재발방지)

①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회원단체는 과거 인권침해사례 및 대응결과 등을 포함하여 인권침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협회 관계단체에 인권침해 재발방지 계획 및 이행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축구인 인권 존중 기반 조성

제11조(축구인 인권교육)

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제2항 각 호의 대상은 매년 스포츠윤리센터가 제공하는 체육인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여야 한다.

② 회원단체는 소속된 축구인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촉구인 인권소위원회

제12조(위원회 설치)

협회는 촉구인 인권보호에 관한 자문을 위해 윤리위원회 내 인권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촉구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촉구인 인권보호 계획 수립
2. 촉구인 인권보호 강화와 관련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장 또는 윤리위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위원 4명 이하(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 ② 위원회 간사는 윤리위원회 간사(협회 사무국 직원)이 담당한다.
- ③ 위원은 윤리위원 중에서 윤리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정관 제29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5조(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협회 정관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23.12.1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